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3778 배당금청구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 피상고인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1777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

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 제4, 5점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